

이 사 회 의 록

1. 회 의 의 종 류 : 2025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2. 회의의 통지일자 : 2025. 09. 08(월)
3. 회의의 개최일시 : 2025. 09. 18(목) 18:00 ~ 19:40
4. 회의의 개최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22(연경반점)
5. 출석 현황
 - 가. 참석대상 임원 : 이사 8명, 감사 2명
 - 나. 개의 정족수 : 재적이사의 과반수 4명
 - 다. 출 석 이 사 : 대표이사 김●식
이사 한 ●, 백●흠, 민●훈, 류●원, 최●민, 김●길, 조 ●(총8명)
 - 라. 출 석 감 사 : 감사 윤●노(총1명)
6. 심의 안건
 - 제1호 의안 : 2025년도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2호 의안 :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안)
 - 제3호 의안 :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 수익금(태양광 패널 설치) 사용 승인(안)
7. 회의 내용
 - 가. 성원보고 개회선언
 - 의장 김●식 : 법인정관 제4장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적이사 8명중 8명이 참석하여 이사회가 성원이 되었기에 사회복지법인 선산복지재단 2025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를 선언하다.
 - 나. 의장 인사
 - 의장 김●식 : 2025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의장을 맡은 대표이사 김●식의 인사와 더불어 심의안건에 관한 이사들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바라다.
 - 다. 전차 회의록 접수, 승인
 - 의장 김●식 : 2025년도 정기이사회 전차 회의록 승인 안건을 상정하고 의장이 낭독 후 이의 여부를 물은 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습니다.' 라고 답하여 전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 승인하기로 선포하다.
 - 라. 부의안건 상정 및 심의
 - 의장 김●식 : 제출된 총3개의 부의안건 외 추가제출 안건 여부를 물은 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없습니다.' 라고 답하여 총3개의 부의안건을 심의안건으로 선포하다.



《 제 1 호 의안 : 2025년도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

○ 의장 김●식 : 2025년도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고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다.

□ 제안설명

1. 추경예산의 주요내용

- 성부정신수양원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 3,253,932천원에서 4,018천원이 증가한 3,257,950천원으로 변경

2. 추경예산의 주요 사유

- 종사자 명절수당 통상임금 반영 및 직책보조비 편성(시설 자부담)에 따른 예산 내역 조정

○ 이사 한 ● : 우리 선산복지재단 산하시설인 성부정신수양원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의자료를 통한 상세한 설명대로 2024년 말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에 따른 명절수당의 통상임금 반영에 대한 부분과 해당 시설의 원장을 포함한 관리자급 직원들에 대한 직책보조비 지원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들이므로 이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 백●흠 : 직책보조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의 협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시설 자부담을 통한 지급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한다. 또한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히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사 한●의 동의안에 재청하다.

○ 의장 김●식 : 이사 한●의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다.

○ 참석 이사 : 이사 한●의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다.

○ 의장 김●식 : 2025년도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 제 2 호 의안 :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안) 심의 》

○ 의장 김●식 :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안)을 상정하고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다.

□ 제안설명

한우리보호작업장의 운영규정 변경을 통해 이용장애인들의 보다 원활하고 명확한 직업재활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전후 비교표

조 항	변경전의 운영규정 조문	변경후의 운영규정 조문	비 고
제9장 이용장애인 복무규정	제9장 이용장애인 복무규정	제9장 이용장애인 복무규정	
	제53조(근무시간) ① 이용장애인의 근무시간은 09:20부터 17:00까지(1일6시간)로 하되 장애 영역별 근로시간(정신장애인 6시간)을 적용하며 주5일(월~금) 근무제로 한다.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작업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이용장애인의 이용시간) ① 이용장애인의 이용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9:00부터 18:00까지 주5일(40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1일의 이용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요일 및 이용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 제목 및 내용 변경

○ 이사 김●길 : 회의자료를 통한 설명대로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안)은 근로장애인과 훈련생들에 대한 근로시간과 프로그램 시간 등 전체 이용시간에 대한 좀더 명확히 규정을 통해 이용장애인들의 작업 및 훈련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항이기에 이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 최●민 :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건의 경우는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통해 작업장을 이용하는 근로장애인과 훈련생들에 대한 근무 및 훈련 조건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기에 당연히 내부 규정을 정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이사 김●길의 동의안에 재정보다.

○ 의장 김●식 : 이사 김●길의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다.

○ 참 석 이 사 : 이사 김●길의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다.

○ 의장 김●식 :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 제 3 호 의안 :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 수익금 사용(태양광 패널 설치) 승인(안) 심의 》

○ 의장 김●식 :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 수익금 사용(태양광 패널 설치) 승인(안)을 상정하고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다.

□ 제안설명

한우리보호작업장은 운영 수익금을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하여 전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시설의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직업재활시설 운영 수익금 사용 근거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4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침	운영 수익금 사용 계획
<p>다. 직업재활시설 운영 수익금의 사용</p> <p>○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생산품의 경우 판매수익금 포함)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용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p> <p>- 다만 시설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u>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익금의 일부를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비로 사용할 수 있다.</u></p> <p>※ 위 사항은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수익금은 전년도 결산서 상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함</p>	<p>■ 태양광 패널 설치 관련 주요사항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p> <p>- 총사업비: 20,160천원 - 보조금: 13,920천원 - <u>자부담: 6,240천원</u></p> <p>※ 자부담 6,240천원 비용을 운영수익금으로 사용하고자 함.</p> <p>※ 사업 시기: 11월 중 설치 예정.</p>

○ 이사 류●원 : 한우리보호작업장의 운영 수익금 사용 승인(안)은 운영 수익금을 활용한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 공공요금 절감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이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 조 ● : 한우리보호작업장의 경우 본 법인의 다른 산하시설들과 달리 운영수익금이 발생하는 구조이기에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자 혜택이라고 말하며 이사 류●원의 동의안에 재정보다.

○ 의장 김●식 : 이사 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다.

○ 참석 이사 : 이사 류●원의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다.

○ 의장 김●식 :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 수익금 사용(태양광 패널 설치)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바. 폐회

- 의장 김●식 : 기타 토의사항 여부를 묻고, 없으면 폐회 동의 바라다.
- 이사 한 ● : 선산복지재단의 2025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회의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 민●훈 : 이사 한●의 폐회 동의에 재청하다.
- 참 석 이 사 : 전원 폐회를 찬성하다.
- 의장 김명식 : 선산복지재단의 2025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아래와 같이 날인하다. -

대표이사 김 ●

이 사 한

백 ●

민 ●

류 ●

최 ●

김 ●

조

감 사 이 ●

윤 ●

